

의안번호	2211975
의 퇴 인	최은석 의원
회 답 일	2025. 11. 7.
추계번호	25E4213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직계존비속 사망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배제 등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97조의2제1항 (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)	○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시,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이 양도 당 시 사망한 경우에도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받도록 함
2	안 제103조제1항, 안 제118조의7제1항 (양도소득 기본공제)	○ 양도소득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연 2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
3	안 제137조제4항 (근로소득세액의 연말 정산)	○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의 분납 기간을 현행 3개월 (2~4월)에서 6개월(2~7월)로 확대

II. 미첨부 근거규정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97조의2제1항 (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103조제1항, 안 제118조의7제1항 (양도소득 기본공제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3	안 제137조제4항 (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①증여자인 직계존비속 사망 시 이월과세 적용 배제, ②양도
소득 기본공제액 상향, ③연말정산 분납기간 확대를 내용으로 하며,
이에 따라 소득세수 감소가 예상됨

- 개정안의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, 직계존비속 사망으로 이월과세 적용에서 배제되어 변경되는 양도소득 규모 및 기본공제액 변경에 따라 달라지는 세수 규모를 합리적으로 전망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함
 - 직계존비속(증여자)가 자산양도시점에 사망할지 여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없음
 -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액 확대에 따른 세수추계를 위해서는 양도자산별·세율별로 세분화된 통계 자료가 필요하지만, 해당 자료가 부재하여 합리적으로 세수 감소 규모를 추정하기 곤란함
 -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의 추가납부세액에 대한 분납기간 확대는 일시적인 세수 이연효과가 존재하지만 전체 세수는 변화시키지 않음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,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수입감소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이정훈	박연서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정훈	02-6788-4669	nororand@assembly.go.kr